

COUNTY
HEALTH &
SOCIAL SERVICES
GUIDE



건강문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서슴치 말고 전화하십시오.
한국건강정보센터

This booklet is funded by
the California Medical Center
for Health Information, Education Research.

Los Angeles County



COUNTY
HEALTH &
SOCIAL SERVICES
GUIDE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의료시설과
사회보장제도 안내**



Korean Health Education,
Information & Referral Center

머릿말

「한인건강 정보센터」는 1986년 11월 비영리단체로 설립되어, 교포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

다향산이 속에 자치 건강을 잊거나 소홀히 하기 쉬운 세로 이민은 이들을 위해 건강관리 길잡이로서 동분서주해 왔다. 생활이 어렵고 언어문제가 있는 이들을 대신하여 미국의료기관에 연결시켰고 또 무로건강진진과 건강강화를 통해 건강교육을 널리 보급하는데 힘썼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교포들에게 미국보건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안내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런 의도에서 교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본 센터는 미국의료기관 안내서를 발간해 되었다. 물론 처음 시도되는 책자이므로 여러가지 충분치 못한 점이 많겠으나, 미국의료시설과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자가 발간되기 까지 본 센터를 도운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또 이 책자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캘리포니아 매디컬센터」와 그의 여러분께 본 기관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한인건강정보센터 이사장
의학박사 한 응 수

머릿말	2
-----	---

I. 한인건강정보센터 안내	4
----------------	---

II. 카운티의료시설 안내	7
----------------	---

1. L. A. 카운티 의료·보건시설 명단	10
2. L. A. 카운티 의료·보건시설 지도	12
3. L. A. 카운티 정신건강관리 외래진료 프로그램	14

III. 카운티 사회보장제도 안내	16
--------------------	----

1. 메디칼	16
2. 일반보조	22
3. 가족과 부양아동을 위한 원조	26
4. 식품권	29

IV. 노인을 위한 건강생활안내	34
-------------------	----

I. 한인건강정보센터 안내

「한인건강정보센터」는 1986년 11월에 비영리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본 기관은 교포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을 목표로 하며 한인사회를 미국 사회의 보건제도에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나이티드 웨이」가 시행한 「한인사회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인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건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웨이」의 코리아타운 테스크 포스에 의하면, 한인사회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그 상태가 극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새로 이민 온 교포들은 언어나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건시설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나이티드 웨이」의 코리아타운 테스크 포스는 「한인건강정보센터」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며, 이 센터의 설립에 주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인사회의 급박한 건강문제가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이사회에 보고되자, 카운티 이사회는 카운티 보건국을 통해 「한인건강정보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최소 기본금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으로 설립된 「한인건강정보센터」는 이질문화 속에

서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교포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제도에 교포들을 연결시킨다. 이중언어로써 전화 정보 알선업무를 수립하고자 한다.
- ② 이중언어 건강자료집을 출판하여 한인사회에 공급한다.
- ③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적 모임을 여러가지로 개발한다.
- ④ 저소득층을 위한 교통수단을 건강관리소까지 마련한다.

「한인건강정보센터」는 로스앤젤레스 보건국 기금을 바탕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여러 미국 재단에 기금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들은 한인사회의 참여도에 따라 할애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모아지는 성금에 따라 기금의 정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금이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고자 애쓰는 우리 교포들의 건강관리에 가까이게 쓰여지며 또 미국기관의 기금확보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됩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인건강정보센터」는 교포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Health Expo의 한장면)

Korean Health Education, Information & Referral Center



The Korean Health Education Information and Referral Center was established in November, 1986 as a non-profit organization. The major intent of the center is to be the liaison vehicle between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existing health care systems.

The United Way study of Koreatown identified health a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the Korean Community in response to a comprehensive questionnaire. The United Way Koreatown Task Force concluded that lack of proper health attention in the Korean Community had reached crisis proportions. The newly arrived Koreans cannot utilize existing health facilities which can provide services because of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They recommended and were the prime organizers in establishing Korean Health Education, Information and Referral Center. Because this urgent problem was ably conveyed to the 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 they provided the initial seed money to form KHEIR Center. With this seed money we have promises from other foundations for matching funds. For every dollar collected from within the Korean Community, hopefully, an equal amount can be given to us by generous outside foundations.

The purpose of this center would be accomplished by:

1. providing a bilingual telephone referral system,
2. developing a bilingual health care service resource directory,
3. providing educational materials and seminars in Korean,
4. providing a system of non-emergent transportation for low income Koreatown residents to health care service centers.

Please donate to this worthy cause which help many fellow Koreans trying to adjust to a new country in an entirely new culture.

-6-



미국사회의 많은 사회기관들이 「환인건강정보센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좀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한인사회의 큰 도움이 필요하다.

II.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의료, 보건시설 안내

Dept. of County Health Service

카운티 의료시설과 건강관리소 이용 안내

이 책자는 L.A.카운티 관할하에 있는 병원, 보건소 그리고 정신건강 보건소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의 거주지에 가까이 있는 카운티병원이나 보건소 소개지는 10페이지에 있다.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카운티 소속병원의 소재지는 별지 지도에 명시되어 있다.

L.A.카운티는 다음과 같은 보건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 응급치료
- 응급치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보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들 및 유료건강보험을 제외한 매디칼과 매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 정신건강관리
- 결핵이나 성병과 같은 전염병의 진료

L.A.카운티 보건국은 보건시설망을 통해 광범한 보건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카운티는 12페이지의 지도에 적힌 그리고 10페이지에 기록된 6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병원들은 성인과 유아에 걸친 모든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5개의 종합보건소가 카운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종합보건소에서는

-7-

응급치료를 해주지 못하지만 병원에서 시행되는 가족의료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LA카운티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42개의 일반보건소에서는 다소 제한된 범위의 진료를 하고 있다. 이들 일반보건소에서는 일반 공중 보건사업을 강조하고 있다.(예를 들어 예방접종과 전염과 관리 같은 것들)

58개소의 정신건강 관리소도 LA카운티 관할하에 있다. 이곳들은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 기관중 *표가 찍힌 곳에는 진료시간 외에 응급정신건강 치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카운티 보건시설을 통해서 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나?

첫째, 페이지 10에 기재된 카운티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기 바란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미리 전화하여 약속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게 된다. 또 전화로 진료소 방문시간도 확인하시기 바란다.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시면 등록부에 등록하면 된다. 당시 처음 온 분이면 환자번호나 등록증을 받게 된다. 그후 환자를 접수한 사람이 치료비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이다. 그 다음 해당진료과로 보낸다. 진료과에서 간호원을 만나게 되며 그 간호원은 증세와 병력에 대해 물어 볼 것이다. 만약 전문가를 볼 필요가 있으면 필요한 알선을 해준다. 필요에 따라 다시 진료소에 오도록 시간약속을 해주게 된다.

당신을 처음 진료해 준 기관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지지 않는 한 같은 보건소를 계속 이용하는 길이 최상의 치료를 받게 된다.

카운티 보건시설을 이용할 때의 경비지불은?

"메디케어", "메디칼" 또는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환자들은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대로 소액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카운티는 각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이런 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즉 보건소 방문, 병원입원비 등을 각자 개인의 수입, 부동산 그리고 가족수에 따라 결정된다. 치료받기 전에 병원이나 큰 보건소에서 진료 받기 전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자신의 지불능력을 검토함이 좋을 것이다. 또는 진료소를 찾아 가기 전에 미리 적은 금액을 내셔도 좋다.

어떻게 카운티 정신건강관리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가?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것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정신건강관리소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미리 전화로 문의하고 약속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게 된다.

거주하는 곳에서 적당한 진료소를 찾기 힘들 때에는 LA카운티 정신건강문제 안내소 (213) 738-4961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도록 한다. 정신건강관리소에 가서 등록부에 등록을 마치면, 정신과 상담인이 증세상담을 하며 또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의료소로 의뢰하게 될 수도 있다.

응급시에는 집 가까이에 있는 그 지역 사무실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화하기 바란다. 주말에 응급치료나 진료시간 이외에 진료를 원할 때도 정신건강프로그램으로 전화하기 바란다.

그 지역 산하에서 시행되는 모든 건강관리에 대해 알고자 하면 LA카운티 건강라인, 250-8055로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전화하기 바란다.



▲미리 우 시의원과의견을 교환하는 「한인건강정보센터」의 한종수 이사장과 이명숙디렉터

L.A. 카운티 의료, 보건시설 COUNTY HEALTH CARE FACILITIES

HOSPITALS

1. Harbor-UCLA Medical Center
1000 W Carson Street
Torrance, CA 90509
24-Hour Emergency Care

2. High Desert Hospital
44300 N 60th Street West (805) 948-8581
Lancaster, CA 93534
Clinics Operate Weekdays, 8 am to 5 pm

3. Martin Luther King Jr./Drew Medical Ctr.
12021 Wilmington Ave
Los Angeles, CA 90059
24-Hour Emergency Care

4. Los Angeles County/USC Medical Center
1200 N State Street
Los Angeles, CA 90033
24-Hour Emergency Care

5. Olive View Midvalley Medical Center
14445 Olive View Drive (818) 364-4378
Sylmar, CA 91342
24-Hour Emergency Care

6. Rancho Los Amigos Medical Center
7601 E Imperial Highway 940-7111
Downey, CA 90242
Clinics Operate Weekdays, 8 am to 5 pm

COMPREHENSIVE HEALTH CENTERS

Clinics Operate Weekdays, 8 am to 5 pm

7. El Monte Comp. Health Center
10953 Ramona Blvd. (818) 579-8463
El Monte, CA 91731

8. H. Claude Hudson Comp. Health Center
2829 S Grand Ave. 744-3945
Los Angeles, CA 90007

9. Hubert Humphrey Comp. Health Center
5850 S Main Street 235-7447
Los Angeles, CA 90003

10. Long Beach Comp. Health Center
1333 Chestnut 599-8787
Long Beach, CA 90813

11. Edward R. Roybal Comp. Health Center
245 S. Fetterly Ave. 260-3371
Los Angeles, CA 90022

HEALTH CENTERS

Clinics Operate Weekdays, 8 am to 5 pm

12. Alhambra Health Center
612 W Shorb
Alhambra, CA 91803 (818) 308-5366

13. Antelope Valley Subcenter
44855 N. Cedar Street West (805) 945-6378
Lancaster, CA 93534

14. Avalon Subcenter
215 Summer Ave.
Catalina Island, CA 90704 510-0185

15. Azusa Subcenter
150 N Azusa Ave.
Azusa, CA 91703 (818) 334-1201

16. Bellflower Health Center
10005 E Flower Ave.
Bellflower, CA 90706 866-7011

17. Bell Gardens Subcenter
6912 Ajax Ave
Bell Gardens, CA 90202 771-7711

18. Burbank Subcenter
1101 W Magnolia Blvd. (818) 500-3501
Burbank, CA 91502

19. Canoga Park Health Center
7107 Remmel Ave.
Canoga Park, CA 91303 (818) 340-3570

20. Central Health Center
241 N.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12 974-8204

21. Compton Health Center
300 E. Rosecrans Ave.
Compton, CA 90221 603-7011

22. Culver City Subcenter
4150 Overland Ave.
Culver City, CA 90230 202-3131

23. Dollard Health Center
1108 N. Olander Ave.
Compton, CA 90220 603-7036

25. Glendale Health Center
501 N. Glendale Ave
Glendale, CA 91206 (818) 500-5762

26. Harbor Health Center
122 W 8th St
San Pedro, CA 90731 519-6060

27. Hawaiian Gardens Subcenter
Lee Ware Park/22310 Warden St. 420-2433
Hawaiian Gardens, CA 90701

28. Hollywood-Wilshire Health Center
520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38 871-4311

29. Imperial Heights Subcenter
10616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47 418-3026

30. Inglewood Health Center
123 W. Manchester Blvd.
Inglewood, CA 90301 419-5325

31. La Puente Health Center
15930 Central Ave.
La Puente, CA 91744 (818) 968-3711

32. Lawndale Subcenter
14616 S. Grevillea Ave.
Lawndale, CA 90260 675-0345

33. Monrovia Health Center
330 W. Maple Ave.
Monrovia, CA 91016 (818) 359-2581

34. Northeast Health Center
2032 Marengo St.
Los Angeles, CA 90033 226-5451

35. N. Hollywood Health Center
5300 Tunjunga Blvd.
N. Hollywood, CA 91601 (818) 766-3981

36. Norwalk Subcenter
12360 E.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868-0569

37. Pacoima Subcenter
13300 Van Nuys Blvd
Pacoima, CA 91331 (818) 896-1903

40. Pomona Health Center
750 S. Park Ave
Pomona, CA 91766 (714) 623-6611

41. Dr. Ruth Temple Health Center
3834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62 730-3501

42. San Antonio Health Center
6538 Miles Ave.
Huntington Park, CA 90256 586-6251

43. San Fernando Health Center
604 S. MacLay Ave.
San Fernando, CA 91340 (818) 365-6341

44. South Health Center
1522 E. 102nd St.
Los Angeles, CA 90002 563-4053

45. Torrance Subcenter
2300 W. Carson St.
Torrance, CA 90501 533-6571

46. Tujunga Subcenter
7747 Foothill Blvd.
Tujunga, CA 91042 (818) 352-1417

47. Valencia Subcenter
23763 W. Valencia Blvd
Valencia, CA 91355 (805) 253-7251

48. Van Nuys Subcenter
23740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01 (818) 901-3903

49. Venice Subcenter
905 E. Venice Blvd
Venice, CA 90291 821-3484

50. West Hollywood Subcenter
621 N. San Vicente Blvd
Los Angeles, CA 90069 854-1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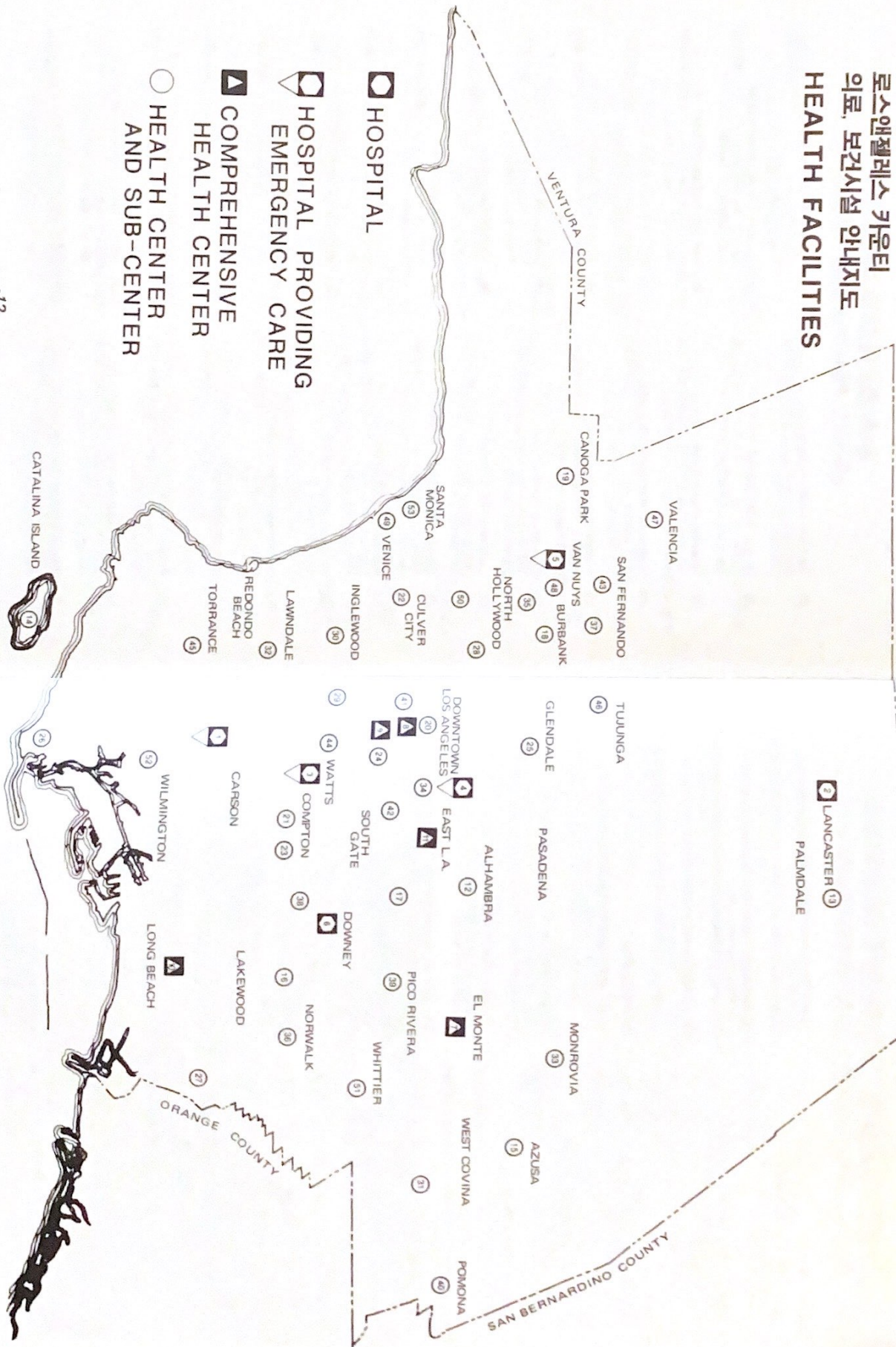
51. Whittier Health Center
7643 S. Painter Ave.
Whittier, CA 90602 696-6251

52. Wilmington Subcenter
1325 Broad Ave
Wilmington, CA 90744 549-4550

53. Yvonne Burke Health Center
2509 Pico Blvd.
Santa Monica, CA 90405 829-2911

54. Community Health Plan
313 North Figueroa Street
Los Angeles, California 90012 974-7644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의료, 보건시설 안내지도
HEALTH FACILITIES



L. A. 카운티 정신건강관리 및 외래진료프로그램 MENTAL HEALTH COUNTY OUTPATIENT PROGRAMS

SERVICE AREA 1	
Antelope Valley Mental Health Service 44851 N. Cedar Avenue Lancaster, CA 93534	(805) 945-6345
Santa Clarita Valley Mental Health Service 25050 Peachland Avenue #203 Newhall, CA 91321 (818) 984-0601 or (805) 255-7822	
SERVICE AREA 2	
East San Fernando Valley Mental Health Service 12148 Victory Blvd. #300 North Hollywood, CA 91606	(818) 985-6550
Crescenta Valley Mental Health Service 2505 E.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818) 248-5293
San Fernando Mental Health Service 11479 San Fernando Road San Fernando, CA 91340	(818) 365-3251
West San Fernando Valley Mental Health Service 9045 Canoga Avenue Canoga Park, CA 91304	(818) 709-2211
Crisis Management Center Department of Mental Health 8101 Sepulveda Boulevard Van Nuys, CA 91402	(818) 901-0327
SERVICE AREA 3	
Santa Monica West Mental Health Service 1525 Euclid Avenue Santa Monica, CA 90404	(213) 451-8731
SERVICE AREA 4	
Long Beach Mental Health Service 440 W. Cowles Long Beach, CA 90813	(213) 599-9280
Long Beach Asian Pacific Mental Health Service 1401 Chestnut, #A Long Beach, CA 90813	(213) 599-9274
San Pedro Mental Health Service 769 West 3rd Street San Pedro, CA 90731	(213) 519-6101
Wilmington Mental Health Service 1325 Broad Avenue Wilmington, CA 90744	(213) 402-0677
Coastal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747 East 223rd Street Carson, CA 90745	(213) 518-6870
Coastal Asian Pacific Mental Health Service 14911 So. Crenshaw Blvd. Gardena, CA 90245	(213) 973-3145
South Bay Mental Health Service 4323 W. Century Blvd Inglewood, CA 90301	(213) 412-2291
SERVICE AREA 5	
West Central Family Mental Health Service 3751 Stocker Street Los Angeles, CA 90008	(213) 299-3680
Hubert Humphrey Mental Health Service 5850 So. Main Street Los Angeles, CA 90003	(213) 235-7534
Compton Mental Health Center 1600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0	(213) 603-7078
San Antonio Somos Familia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6450 Garfield Avenue Bell Gardens, CA 90201	(213) 806-4921
SERVICE AREA 6	
Arcadia Mental Health Center 330 E. Live Oak Avenue Arcadia, CA 91006 (818) 445-4350 or (213) 684-2884	
La Puente Mental Health Center 160 So. Seventh Avenue La Puente, CA 91744	(818) 961-8971
SERVICE AREA 7	
Rio Hondo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17707 Studebaker Rd. Cerritos, CA 90701	(213) 402-0677
El Camino Mental Health Center 11721 A Telegraph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213) 949-8455
SERVICE AREA 8	
Hollywood Mental Health Service 4759 Hollywood Blvd. Los Angeles, CA 90027	(213) 669-1060

-14-

L. A. 카운티 정신건강관리 및 외래진료프로그램 MENTAL HEALTH COUNTY OUTPATIENT PROGRAMS

SERVICE AREA 8 (Cont'd)	
Northeast Family Mental Health Service 5321 Via Mansori Rd. Los Angeles, CA 90042	(213) 258-8432
Royal Family Mental Health Service 245 So. Fetterly Avenue Los Angeles, CA 90022	(213) 260-3287
Skid Row Mental Health Service 515 E.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1	(213) 974-6501
Asian Pacific Counseling & Treatment Center Department of Mental Health 3407 W. 6th Street, #510 Los Angeles, CA 90020	(213) 738-4205
Asian Pacific Children & Youth Mental Health Service Department of Mental Health 1720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213) 738-4246
Indochinese Mental Health Service 1720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AFTER HOURS EMERGENCY MENTAL HEALTH CARE	
LAC-USCMC—Emergency Psych 1934 Hospital Place Los Angeles, CA 90033	(213) 226-5598
LAC-HARBOR UCLA—Emergency Psych 1000 W. Carson St. Torrance, CA 90509	(213) 533-3144
Olive View Emergency Psych 7555 Van Nuys Blvd. Van Nuys, CA 91405	(818) 901-3251



▲ 한미건강정보센터「기금모금」성가의 밤」에서 열람하는 소프라노 김영미씨와 로렛은 연함김리교회 성가대. (1987년 12월)

-15-

III.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사회보장제도 안내

1. 메디칼 (Medical)

메디칼이란?

메디칼이란 캘리포니아주에서 월세료를 받는 이, 저소득자, 또는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이에게 제공하는 의료비를 의미한다.

메디칼 신청자격은?

다음사항으로 인해 금전적 보조를 받고 있으면 메디칼은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 (1) AFDC(가족과 부양아동을 위한 보조) 받는 이
- (2) SSI/SSP(생활보조금과 주정부 보조) 받는 이
- (3) ECA(처음으로 현금보조) 받는 이
- (4) RCA(피난민 현금보조) 받는 이
- (5) IHSS(가내보조 서비스) 받는 이

일반적으로 21세 이하로서 일반보조를 받는 이는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일반보조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사람과 본인의 나이가 21세 이하이거나 가정에 21세 이하의 아동이 있으면 메디칼을 신청하겠다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메디칼은 일반 보조에 준하여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일반보조 상담인이 메디칼 신청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이다.

금전원조를 받지 않을 경우란?

만일 제한된 제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전원조 신청자격 미달이거나 금전원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아래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 65세 이상
- 21세 미만
- 불구자
- 장님
- 가족과 부양아동을 위한 원조자격 미달자
- 임신부
- 특수 요양원이나 중급 요양원에서 치료중인 자
- 18개월 이내에 온 피난민

21세에서 64세 까지의 경우(MIAS)

위의 사항에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성인들(21세에서 64세까지)은 메디칼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의료보조가 필요한 사람들(MIAS)로 불리우며 LA카운티 보건국 산하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보조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기타 조건들

1. 거주지역

미국시민, 영주권자이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여야 함.

2.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살고 있는 곳 또는 부인, 남편, 부양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그 가격이 아래 명시된 "기타사항"을 포함한 가격이 6,000달러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소유하고 있는 기타 부동산이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도 감안되어야 한다.

메디칼 신청자격 심사인에게 더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란다.

기타사항(재산)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종합액면가치가 1,500달러 이하인 생명보험이나 개인용 기타재산은 관계없다. 예를 들면 교통편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1대, 결혼반지나 상속된 귀금속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지불된 금액이 1,800달러 이하인 장례절차비용, 묘지, 상여금 도구나 가재도구도 이 사항에서 제외된다.

기타 재산으로 현금, 은행예금, 주식, 채권, 제외대상이 아닌 생명보험의 현금가치, 제외대상이 아닌 자동차의 시장가치, 100불 이상되는 귀금속 중 제외대상이 아닌 것, 잇가 6,000불 이상의 기타 재산 등은 메디칼 자격 심사조건에 감안된다. 그러므로 메디칼 신청자격이 되려면 아래 명시된 가족당 재산 총액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 족 수	1985년	1986년	1987년
1인	1,600불	1,700불	1,800불
2인	2,400불	2,550불	2,700불
3인	3,550불	2,700불	2,850불
4인	3,700불	2,850불	3,000불
5인	3,850불	3,000불	3,150불
6인	3,000불	3,150불	3,300불
7인	3,150불	3,300불	3,450불
8인	3,300불	3,450불	3,650불
9인	3,450불	3,600불	3,750불
10인이상	3,600불	3,750불	3,900불

메디칼 자격심사에 수입이 영향을 주는가?

수입이 자격심사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메디칼 혜택을 받기 전에 자신이 의료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수입이 고려된다.

이것을 비용분담(Share of Cost)라 부른다. 이 비용분담은 가족공제 수입총액에서 주정부나 주정부가 책정한 가족부양 기본금을 제외함으로써 비용분담이 결정되게 된다. 메디칼 담당관이 비용분담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설명해 줄 것이다.

메디칼 받을 수 있는 두가지 방법

만일 금전보조나 비용부담없이 메디칼을 받도록 인가를 얻으면 메디칼 카드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사항에 잘 설명되어 있다.

여러 사회복지부 지역사무소에서 개최하는 메디칼 혜택에 관한 모임에 참가하여 메디칼 카드를 받든지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메디칼 집으로 우송되는 메디칼 카드를 받든지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메디칼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의사나 치과의사 사무실 방문진료
- 병원이나 요양원 진료
- 병기실형이나 X-Ray 서비스

-정신병치료
-약치방과 약
-안경, 보청기, 의료기구 또는 의사가 요청한 기타 장비
-점글치료
-21세 이하의 아이들은 아동건강과 신체자유금지 프로그램(Child Health and Disability Prevention Program)을 통해 특수검사를 받을 수 있다.

메디칼 혜택은 위 두가지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간에 금전보조나 그 액수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진술한 모든 사항은 절대 비밀보장된다.

메디칼 카드

주정부의 보건국은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또는 비용부담을 하는 이를 제외한 메디칼 혜택자에게 카드를 보내준다.

비용부담에 해당하는 이는 자기 부담액을 냈거나 내겠다고 약속한 이만이 메디칼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비용부담을 마친 후 메디칼 카드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자격심사 담당관이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된다.

메디칼 카드는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한다. 언제 응급치료가 필요할 때 담당자가 치료받은 비용을 메디칼 프로그램에 청구하기 위해서 카드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메디칼 카드를 받게 된 후 주정부에서 보내는 카드가 월초 5일내로 오지 않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대응 메디칼 카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메디칼 카드가 있어도 메디칼을 인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약국을 본인이 잘알아서 찾아야 한다.

또한 18세 이하, 65세 이상, 임신부 또는 임신한지 1개월이 된 이들을 제외하고는 처방을 포함하여 모든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매번 1불을 내야 한다.

비용금환자가 응급치료를 받을 때에도 역시 같은 비용을 내야 한다

메디칼 카드가 있더라도 의사나 그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치료하기 전에 주정부 보건국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사전 인가"라고 한다. 대개 진료인들이 어떤 진료가 사전승인을 요구하며 진료하기 위해 어떻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주정부 보건국에서 인가한 약에 해당 안되는 약을 처방 할 경우에는 "사전인가"가 필요하다

건강관리 제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건강관리제도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건강관리제도는 건강관리기구(HMO), 사전 지불된 보전계획(PHP) 또는 초기증상치료제도(PCCM)이라 불린다.

위에 명시된대로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가지 방법에 대한 사회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강좌에 참가해야 한다.

그 강좌에 참가한 이들은 건강관리제도나 매월 메디칼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정의 양식을 받아야 한다.

건강관리제도를 택한 경우에는 이 제도에서 지정하는 의사, 약사,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건강관리제도가 마련하고 있는 예외가 있긴 하나 건강관리제도를 택하면 1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진료를 받기 전 주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메디칼 혜택을 받기 전에 의료비용이 든 경우?

이 비용에 대해 메디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의료서비스를 해 준 사람에게 그 비용을 메디칼 프로그램에 지불하도록 요청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메디칼 프로그램에서는 의료비용을 개인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는다. 메디칼 비용을 소급하고자 하면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소급 청구서는 AFDC나 메디칼 신청하기 전 3달 전까지 할 수 있다.

어느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로스앤젤레스 보건국 산하의 여러병원과 보건소에서 필요한 진료를 항상 받을 수 있다. 이 병원들과 보건소도 메디칼 카드를 받으며 1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카운티 보건기구들이 여러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 왔다. 각 병원들은 유명 의과대학들과 연관을 맺고 있다.(UCLA와 USC) 카운티병원과 보건소들은 버스로 갈 수 있다.

카운티 병원에 입원된 이 가운데 메디칼 받을 자격이 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이는 카운티 병원에서 메디칼 신청을 해주게 된다. 메디칼이 입원 치료비용을 내주게 된다. 카운티 보건국도 또한 건강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입할 수가 있다. 이 제도의 회원이 되면 모든 건강대책을 마련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213) 974-8165로 문의하면 된다.

개인보험 소유가 메디칼 자격심사에 영향을 주는가?

현마디로 영향이 없다. 단, 의료보조 프로그램(MAOP)에서 지불하고

있는 건강보험 액수는 소득에서 공제가 된다. 개인적으로 보험이 있거나 차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동건강, 신체부자유 방지프로그램(CHDP)란?

아동건강 신체부자유방지(CHDP) 프로그램은 메디칼로써 신체검사를 한 후 진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은 이용해서 건강문제가 있는 아동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타주를 방문할 때 메디칼을 사용할 수 있는가?

메디칼 카드나 건강보험 카드로써 타주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 타주를 방문할 계획 중에 메디칼 카드를 받고자 하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타주에서도 메디칼 카드로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용지를 받아가야 한다.

타주를 방문할 예정으로 건강관리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이들은 그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응급치료에 관한 정보를 얻기 바란다.

메디칼에 대한 나의 권리는 무엇인가?

1. 영어를 이해하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인종, 피부색깔, 종교, 출신국, 성별, 정치단체 관련, 연령, 불구, 결혼여부에 관련없이 공정하고 대등하게 취급받을 권리가 있다.
3. 비록 구두로 메디칼 수혜자격이 없다고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메디칼 프로그램 수혜여부에 관해 서면으로 보고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혜자격 승인이나 부결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는 메디칼 프로그램의 규례와 규정에 관한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 메디칼로 인해 보고된 정보사항은 절대적으로 비밀보장을 받을 권한이 있다.
6. 아동건강 신체부자유 프로그램, 가족계획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알 권한이 있다.
7. 만일 사회복지국이나 보건국에서 취한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주정부에 청문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럴 때 결정이 난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청문서는 주 청문과 : P. O. Box 10280 Glendale, CA 91209로 보내야 한다.
8. 끝으로 위사항 중 2항에 관련하여 공정하고 대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할 때 민권위반고발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다.

메디컬과 관련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1. 아래의 사항인 경우 10일 이내에 담당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본인이나 가족의 수입이 증가, 감소 또는 정지된 경우, 즉 사회보장금, 용자금, 배상금, 기타 수입 등을 의미한다.

-카운티나 주 밖으로 이사하거나 방문하려고 할 때

-본인이나 가족에 직접 관련된 여부를 불문하고 식구가 늘거나 줄 때

-부동산이나 재산의 종목을 팔거나, 없애거나 이양할 때 또는 본인이나 가족의 일원이 자동차, 집, 보험금 등이 생겼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비용을 타인이 대신 지불하였을 때

-본인이나 가족의 일원이 취직, 전직 또는 실직되었을 때

-취업이나 교육에 관한 비용에 변화가 있을 때(즉 택아버, 교통비 등)

2. 메디컬은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가족의 일원은 사회보장증명서(소시얼 세큐리티)번호를 신청하고 또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맵인, 불구 또는 64세 9개월 이상의 나이인 사람으로 그 혜택을 받을만한 사람이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책임이 있다. 만약 신청을 안하면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한다.

4. 어떤 건강제도(보험)이 있으면 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5. 제 3자의 잘못으로 또는 부주의로 인해 사고나 상해가 발생하여 메디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사회보장국으로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6. 당신의 경우가 질적 향상을 위해 심사를 받게 되면 주정부에 협조할 책임이 있다. 협조를 거부할 경우 메디칼 혜택이 끊어지게 된다.

2. 일반보조 (General Relief)

일반보조란 무엇인가?

일반보조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마련한 후생 제도로써 해당자는 다른 후생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자격은?

일반보조의 자격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거주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재정적인 해당사항이 되어야 한다.

● GR보다 적은 액수의 한달 총수입, 혼자서 살고 있다면, 기본 액수는 한달에 \$228이고, 다른 이들과 같이 산다면 액수는 더 낮아진다.

● 당신의 개인재산(주식, 채권, 보험 등)은 성인 한사람당 \$500 이상이 될 수 없다.(한가족당 \$1,000미만). 당신은 \$1,500 이상의 자동차를 한대 소유할 수 있다. 성인은 \$50 이상의 현금을 가질 수 있으나, 한 가족당 \$100 미만이 제약.(만약 당신이 GR 수혜자라면, 총액수 첨가)

● 만약 당신이 시장가격 \$34,000 혹은 그 이하 가치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GR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단, 카운티가 당신에게 지불한 GR을 다시 보충받을 수 있도록 한 유치권에 반드시 당신의 서명이 필요하다. 만일 당신이 소유한 집이 시장가격 \$34,000이 넘는 경우에는 당신은 GR수혜의 자격이 없다.

만약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는?

만일 자격자가 아니거나 면제된 경우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그리고 18세 이하로써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포함한 당신 가족들은 당신이 실직하고 있는 동안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일반보조(GR)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당신이 따라야 할 "조건"들이다.

● 당신은 즉시 주 고용개발국에 고용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하며 당신은 담당 직원의 지시대로 재등록해야 한다.

● 당신 스스로 일을 찾아야 하며 담당 직원이나 혹은 사회봉사 직원에 의해 마련된 "직업조사" 서류를 완성해서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야 한다.

● 당신은 GR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운티 직업프로젝트"에 참가하여야 한다.

● 당신은 만약 그것이 당신의 선택분야의 고용이 아니라라도 반드시 직업이 있을 때는 이를 받아들이어야 한다.(당신이 최저 임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GR에서 받는 액수보다는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 만약 누군가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사유"에 불응할 경우 당신을 비롯한 모든 수혜인은 60일 동안 수혜혜택을 받지 못한다.

만일 누가 이포드거나 혹은 불구이거나 일을 못하는 경우라면?

만일 당신이 일할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시할 경우 당신과 다른 가족은 GR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경우 학교 다니지 않는 18세의 자녀도 포함된다) 주치의가 없을 경우에는 당신이 일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보건소로 의뢰하게 된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 또한 불구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Disability) 주정부 불가자보험 (State Disability Insurance), 생활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등과 같은 다른 불가자 혜택 프로그램에 신청하도록 요청되게 한다. 만약 당신이 영구히 일할 수 있으면 당신은 SSI/SSP 혜택을 SSA와 함께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당신의 SSI/SSP의 자격을 심사하는 동안 당신을 GR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당신의 SSI/SSP신청이 거절되면 반드시 청원을 해야 한다.

GR(일반보조)에는 어떤 종류의 혜택이 들어 있는가?

1. 응급보조

만약 당신이 GR을 받을 수 있다고 심사 결정되면 제출서류가 미결인 동안에는 당신은 제한된 응급보조를 받을 수 있다.

거주지에서의 출출, 유틸리티의 정지나 회복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는 신청날짜로부터 30일동안 우선 지급된다. 응급보조에는 양식이나 집 없는 이들을 위한 숙박도 포함된다. 만일 일을 하기 위해서 의복이 필요하거나, 극단적인 응급상황일 경우에는 각 개인에게 의복비도 지급된다. 각 개인이나 극단적인 응급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는 비누, 샴푸, 빗, 면도날 등과 같은 개인비품 금액도 지급된다.

2. 허용된 보조금

GR자격이 인정되어 GR자격으로 있는 한 우편으로 통하여 매달 GR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DPSS가 결정하기를 금전관리문제가 있거나, 비상식량과 주거지가 필요하면 당신은 현금과 함께 식량이나 주거지 도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만일 당신이나 가족들이 임원하면, 당신의 일반보조(GR)는 임원한 달에 마지막 날짜로 정지된다. 그렇지만 만일 당신의 의사가, 임원한 다음달 마지막 전까지 퇴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달간 더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다.

3. 특별수요

당신과 가족들이 GR을 받을 수 있으면 정규적 보조금 이외에 특별수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과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특별수요의 예 :

피부와 일거리를 찾는 데 필요한 교통, 의사에 게 가는데 필요한 교통비,

의사가 추천할 경우 밖에서의 식사, 새 직장에서 필요한 작업기구를, 다른 생각에 특별수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담당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매달 수많은 GR신청자나 수혜자나 DPSS사무실에 찾아오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응급처리에 많은 시간이 요한다. 만일 당신이 약속시간에 늦거나 나오지 못할 경우, 당신이나 타인의 혜택에 차질이 생긴다. 만일 당신이 여하한의 이유라도 약속시간에 늦거나 나타나지 않을 경우(사전통고없이), 당신의 신청서가 기각되어 버릴 수도 있음을 사실로 인식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계속 필요로 한다면 똑같은 신청과정을 반복해야만 한다.

일반보조에 대한 나의/우리의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 당신이 비록 적격치 못하다고 통고를 받았더라도, GR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2. 당신의 성별이나 인종, 종교 그리고 어느나라 출신이든 상관없이 후생부의 보조와 봉사를 문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필요하다면 당신은 식품권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만일 당신의 GR신청이 거절되었다는 통고를 받으면 신청거부 취급사무소 지방사무실에 당신이나 당신을 대표한 사람이 설명요구와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당신의 GR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보조금 삭감이나 중단 등과 같은 조항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공청회를 원치 않는다고 서명하지 않는 한 그것들에 관한 공청회가 열릴 것이다. 당신은 이 공청회의 결과 이외에 조항에 관한 서면통고를 받게 된다.
6. 당신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7. 당신의 전임직원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나의/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1. 우리에게 필요한 확인서류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신원, 현재 소득증명, 소시얼 세큐리티번호, 직장을 구하려고 등록을 마친 서류, 직업상담소에 참가한 확인서류, 노동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서류, 적절한 종류의 일거리를 찾아 신청하고 있다는 증명 등도 포함된다)
2. 모든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사정상 부득이 늦는다면 사전에 당신 담당 직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3. 만일 당신이 새 직장에서 일한다거나, 소득이나 재산을 받는다면, 이사를 간다거나, 가족중 누가 이사를 한다거나, 들어오거나 할 경우는 당신 직원에게 5일 안에 알려야 한다.

4. 당신의 처지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할지라도 CA7, 즉 "월말 자격자 보고서(Monthly Eligibility Report)"를 매달 작성해서 매월 5일까지 담당 직원에게 보내야 한다.

5. GR은 카운티가 SSI/SSP가 보류된 직업없는 이들에게 지불한 중도보조금이나 직업을 찾는 이들이 참가한 직업훈련 시간을 제외하고는 상환되어야 한다.

나의 승락없이 나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가?

보고된 자료는 비밀보장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나 가족의 일원이 중죄를 지어 취조영장이 발부되었을 때에는 경찰에 신원, 전화번호, 주소에 관한 정보를 양도하도록 요구된다. 가족의 일원이 죽은 경우도 경찰에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가족과 부양아동을 위한 원조 (AFDC)

가족과 부양아동을 위한 원조란 무엇인가?

AFDC는 원조가 필요한 가족과 임신한 여성을 위한 공공후생 프로그램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연방과 주정부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본적 자격조건은?

- 귀하의 가족에 임신한 여인이 있거나 부모 중 한명 또는 양친의 보호나 보조를 받지 못하는 자녀가 최소한 1명이 있어야 한다.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불구가 되었거나, 실직하였거나, 함께 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귀하가 아포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니면 직업을 찾기 위해 직업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등록하여야 한다.

- 보조를 받는 이들은 내국 시민이거나 영주권 소유자이어야 한다.
- 보조를 받는 아들은 19세 이하여야 한다. 18세 아들은 고등학교

직업학교 또는 기술학교에 다녀야 하며 19세가 되기전 졸업할 예정이어야 한다. 16세 또는 17세 아들은 학교나 직업훈련소를 전적으로 다녀야 하며, 또는 직업개발국에 등록해야 한다. 직업알선이 있을 때 취직하여야 한다.

- 가족의 매달 총수입이 주법이 제정한 가족 수입 최대액수의 1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가족 매월 실수입은 가족에 대한 주정부가 제정한 최대액수보다 적어야 한다. 실수입은 사회보장금과 그와 유사한 혜택을 합한 총액을 말한다. 실수입이란 강제임금공제액, 직장직업비용, 택시비용 등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의미한다.

-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과 실제 재산의 총액이 \$1,000을 넘어선 안된다. 집과 \$1,500 상당의 시장가격을 지닌 자동차 한대는 계산되지 않는다.

그 이외에 적용되는 규율이 있을 수 있다. 담당관이 이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이다.

AFDC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소정의 양식을 구비해야 된다. 이 구비서류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가족이 AFDC규정에 준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 가족 모두가 사회보장제도번호를 제시하여야 하며 AFDC신청을 필하였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 AFDC자격이 될 때, 얼마를 받게 된다는 편지를 받게 된다. 자격이 안되는 경우, 아동보조에 대해 검찰청장을 만나야 한다.

- 만일 음식물이 없고 주거지나 관리비가 없으며 이와 유사한 위급한 상황일 때에는 담당자에게 말하면 특별한 조치를 받게 된다.

당신의 권리란?

- 예의, 배려 그리고 대우를 받아야 한다.

- 차별대우 받지 않으며 또한 차별받은 느낌이 있으면 불평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주나 연방법에 의거한 사항 외에 모든 정보는 절대 비밀보장된다.
- 자신의 개인사정을 담당관과 의논할 수 있으며 당국의 처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 혜택이나 감소나 정지에 관해 10일전에 서면통지 받을 권리가 있다.
- 당국의 처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주정부에 청문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신의 책임은?

가족의 수혜자격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가 생긴 후 5일 이내에 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것은 일을 시작했거나 그만 두었을 때, 돈이나 재산을 받은 경우, 가족 수가 변한 경우, 이사한 경우를 말한다.(우체국은 AFDC 수표를 이식한 곳으로 보내주지 않는다)

변동이 없더라도 월별 자격보고서(CA-7)를 제출해야 한다.

CA-7을 완전히 필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AFDC를 받을 수 없다.

AFDC혜택이란?

●현금: 매월 2회에 걸쳐 수표를 받는다. AFDC자격을 지닌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된다. 한달에 총액은(수표 두장 총액) 다음과 같다.

수입이 생기면 AFDC는 삭감된다.

1인: \$258.00	6인: \$802.00
2인: \$424.00	7인: \$880.00
3인: \$526.00	8인: \$959.00
4인: \$625.00	9인: \$1,036.00
5인: \$713.00	10인: \$1,114.00

AFDC특별수요: "특별수요"가 있을 때 추가금액이 지불되게 된다. CA-2 "보조가격에 필요한 진술서"에 기술된 특별수요항목을 피아 한다. 이에 해당되는 사항이 적용된다고 여기면 이에 관해 담당관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임신평별수요: 가족중 임신을 한 경우, 출산전 매달 별도로 \$70를 추가받게 된다.

메디칼: 메디칼이 약제조, 의사, 치과의사, 병원비를 부담한다. AFDC를 받는 이의 대부분은 메디칼을 인정하는 약국, 병원, 치과의사로 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메디칼 카드를 매달 받게 된다.

식품권: 식품권으로 더 많은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AFDC를 받는 대부분의 가족들은 식품권을 받는다. AFDC를 받지 않아도 식품권을 받을 수 있다.

사회봉사: 가정문제, 밀린 게스 또는 전기세, 택이버, 법률문제로 문제가 있을 때 사회사업가에게 상의할 수 있다. 담당관이 전화번호를 주게 된다. 청각장애가 있을 때에는 1-800-242-4026으로 하면 된다.

무료건강진단: AFDC를 받는 이중 21세 미만은 누구나 CHDP프로그램을 통해 무료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 외에 시각, 청

각검사, 주사 기타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3세에서 21세까지는 매년 무료 치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사에게 가져나 약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식품권 (Food Stamps)

식품권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식품권 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의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돈보다 더많은 음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해당이 되는 가정은 프라스탁카드, 종이로 된 식품권 ID(증명)카드를 받아 식품권 받는데 쓰게 된다. 보통 식품권만으로는 한달간의 음식비를 충당치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일부 현찰로도 사고 일부는 식품권으로 음식을 살 수 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은 한 식품권 가족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같이 사는 사람들도 분리된 식품권 가족에 속할 수 있다. 부모나 형제가 60세 이상이거나 보조금(SSI/SSP), 사회보장금, 신체부자유로 인한 제향군인 혜택을 받는 이를 제외하고는 부모, 형제, 자녀들, 즉 같이 사는 사람들은 한가족으로 신청해야 한다.

하숙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하숙제공 가족의 일원으로 식품권을 받을 수 있다.

누가 식품권 자격이 있는가?

식품권을 받으려면 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당신의 가족수입이 가족수에 따라 정해진 수입보다 많으면 안된다. 가족수에 따라 식품권을 받는 한도는 미국 농림부가 정하고 연방정부 빈민수입 카드리인을 기본으로 하여 미국농림부에 의해 조정된다.

●저축, 은행구좌, 증권, 적금 등 총액이 \$1,500을 넘어서는 안된다. 식구가 두사람 이상이고, 적어도 한사람이 60세 이상일 경우, \$3,000 이상이면 안된다.(당신의 집과 가구는 포함이 안된다.)

●식구들의 사회보장제도번호(S. S. No.)를 전부 보고해야 한다.

●로스엔젤스 카운티에 거주하여야 한다. 방문중이면 식품권을 받을 수 없다.

●식품권 취급담당자는 외국인인 경우 추방명령을 받은 자라면 이

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그 외국인이 추방령령을 받았는지 여부를 물어 볼 수는 없다. 미국시민이 아닌 경우 이민상태증명을 물어 볼 것이며 만약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들은 식품권 받음 자격을 상실한다. 이 증명을 얻기 위해 도움을 청하지 않는 한 외국인상태에 관한 구비서류나 이민자격증서를 요청하지 않는다. 이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이나, 보여주고자 하지 않는 이라도 이민국에 보고되지는 않는다

●나이 18세~60세 사이의 가족중 일할 수 있지만 직장이 없는 사람은 꼭 직업개발국에 등록해야 한다.

이것은 12세미만의 아이를 갖고 있는 독신부모는 제외된다. 가족 중에 누구라도 직업개발국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는 경우, 온 가족이 받지 못하게 된다.

●식구중 파업하고 있는 일원이 있으면 식품권을 받을 수 없다. 단 파업하기 하루전 식품권 받음 자격이 되었거나, 신청한 날 식품권 자격을 얻었을 때는 받을 수 있다.

●대학생들은 직장이나, 자가업종에서 주당 20시간을 최소한 일해야 한다.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일하며,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또는 6살 이하의 가족에 대해, 또는 적절한 자녀보호가 없거나 AFD-C수혜자로써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부모역할을 할 경우이다.

●SSI/SSP(보조금/주정부보조금)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식품권을 달 수가 없다. 왜냐하면 SSI/SSP 금액은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현찰지출(Cash-Out)" 주이므로, 식품권 대신 추가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어떤 식품권 혜택이 있나?

식품권은 식구수와 수입(월급, 은퇴금, 소시얼 시큐리티, 실직혜택 등)에 따라 다르다. 식품권 혜택은 두달전의 수입까지 계산된다.(즉 3월 수당은 1월 수입에 준한다). 만일 식구수와 수입에 변경이 있으면 식품권 받음 양도 바뀐다.

당신의 준소득은 기본적인 것(의복과 버스비같은 비식품류 비용)과 특별한 것을 공제한 후에 수입을 말한다. 다른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일과 관계된 경비, 일할 경우 택이경비, 상당한 주거 및 관리비에 드는 것을 말한다. 만일 당신의 운방, 냉방비인 경우 관리비 계산에 사용되는 지정된 관리비용 허용액이 적용된다. 만일 실제비용이 더 높은 경우에는 실제 관리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적용하도록 담당자에게 물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60세 이상일 경우, 또는 불구가거나 타이틀 II 소시얼

시큐리티 불구 혜택이나 불구재향군인이나 그의 유가족인 경우 당신은 의료비와 주택경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돈이 없어서 식품권이 당장 필요한 경우, 신청한 후 5일내에 식품권을 대할 수 있는 증명서나 프라스틱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당신의 가정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담당 사무원에게 물어 볼 수 있다.

수혜자로써의 책임? (영세서를 자세히 읽어 보기 바란다.)

꼭 해야할 법적인 책임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 의문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상담하기 바란다.

수혜자는 "매월 수혜자 보고서" 즉, CA7 제출해야 한다. 매월 각 수혜자는 가정상태를 이 보고서에 기입하여 담당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바로 그 달말에 하는 것이다. 즉 2월에 보고에 낸 보고에 준하여 1월의 가족수당을 받게 된다.

당신은 다음달 5일내로 CA7을 기입하여 보고해야 한다. 11일전 까지 사회보장국에 도착해야 하며 요구하는 모든 영수증과 지불증도 함께 보내야 한다. 매달 CA7에 보고하는 사항은 수혜여부와 2달후에 받게 될 식품권의 금액을 정하는데 사용된다.

CA7 보고를 하지 않으면 식품권을 못받게 된다.

어떤 식품권 혜택이 내게 해당되는가? (계속된 사항)

상당의 노인 / 장애인 그리고 아주 농업인 가족들은 CA7 보고를 매달 할 필요가 없다. 이 사항이 당신의 가정에 해당될 때 담당자는 실명을 해 줄 것이다. CA7을 필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수입이나 지출이 \$25 이상의 변화가 있거나, 가정상황이 변화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꼭 보고를 해야하되 이때는 "식품수혜자 가정변화 보고서(DFA 377.5)"에 변경된 상황을 전화나 직접가서 알려야 한다.

식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나 그 소정양식을 원할 때는 담당자는 DFA 377.5양식을 줄 것이다. 변화된 사항을 보고하지 않으면 식품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식품권 프로그램에 지목되는 사항을 반환해야 되며 식품권 프로그램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당신은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주정부나 연방의 담당자와 협조를 해야 한다.

식품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해당된 경우 종이로 된 식품권 증명서와 플라스틱 발급카드를 받게 된다.

우편으로 오게 되면 서로 다른 봉투에 오게 된다. 받게 되면 두 카드에 "싸인"을 해야 한다. 플라스틱 카드는 그날 언제 식품권을 탈 수 있는 곳을 알려주며 담당자는 배급소 주소를 알려 줄 수 있다. 플라스틱 카드와 종이로 된 증명서를 들고 발급소로 간다.

발급소 취급인은 두 카드에 "싸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플라스틱 카드를 컴퓨터에 넣는다. 컴퓨터는 식품권을 얼마나 발급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취급인은 그 영수증에 "싸인"시킨 후 그날의 식품권을 넘겨 준다.

중요로 된 증명서와 플라스틱카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야 한다.

식품권 발급소에 본인이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자로 하여금 식품권 증명서를 갖고 발급소에 가지고 가도록 하며 대행자(위임자)의 이름과 "싸인"이 식품권 카드에 있어야 한다. 위임할 사람이 없으면 비상대행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담당자에 긴급대행용지(Special Emergency Authorization Form)를 달라고 하여 비상대행자가, 특별비상 인정서, 식품권 카드, 플라스틱 카드를 식품권 발급소로 갖고 가야 한다. 취급인은 그 용지와 카드에 "싸인"이 같은가를 검사후 식품권을 그 위임자를 통해 당신에게 갖고 가도록 한다.

식품권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식품권을 얻게 되면 "싸인"을 한다. 잃어버려 되돌아 온 경우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식품을 사기 전에 식품권을 책에서 빼어내지 말아야 한다. 식품상회에서 취급인들이 식품권 책이 같은 번호 서열로 되어 있지 않으면 \$5, \$10짜리 식품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1 짜리는 번호가 섞여도 받는다.

어떻게 식품권을 사용하는가?

식품권으로 거의 모든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또는 세탁, 수입음식들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애완동물용물음식, 비음식류(차약, 비누 등), 술, 담배는 안된다.

식품권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권리란?

- 비록 식품권 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도 식품권 신청을 할 수 있다.
- 민족, 피부색, 성별, 나이, 결혼여부, 장애여부, 종교, 국적, 정치적

믿음 여부를 막론하고 신청권리가 있다.

- 그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으면, 주정부 공청회나 주 사회보장국에 의한 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제공된 정보는 비밀이며 사회보장제도, 식품권 보조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에만 사용된다. 어떻게 당신이나 당신이 가족이 형사조치가 내려졌으면 범죄조치(형사)를 위해, 신분,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

가족의 일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보고해야 한다.



▲Health Expo '87의 한 장면

IV.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노인을 위한 건강생활 안내 Senior Citizen Survival Guide

●HELP LINES(봉사기관)

- (1) 공중노인보호 및 봉사기관(Adult Protective Services, Dept. of Public Social Service)
노인에 대한 학대, 경시, 착취 및 위협 등의 위험한 경우를 당했을 때 돕는 기관이다.
Metro North(메트로 노스) (213) 669-3651
Hollywood(홀리우드) (213) 669-3655
Civic Center(시빅센터) (213) 974-9156
Adams & Grand(아담스 & 그랜드) (213) 744-4921
Glendale(그렌데일) (213) 500-3664
- (2) 피해자 신고(Victims for Victims) (213) 850-5001
- (3) 건강문제(Health Line) (213) 250-8055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와 카운티 건강관리와 관련된 문제점 및 불편한 점을 해소하도록 돕는다.
- (4) 양노원이나 요양소같은 거주지에 대한 민원철조 프로그램
(Nursing/Retirement Home Ombudsman Advocacy Program)
L.A.시(15개시 의원지역) (213) 624-9283, (818) 782-4303

- L.A.카운티(L.A.시 제외) 무료전화 (800) 334-WISE
캘리포니아주 직선전화 무료전화 (800) 231-4024
- (5) 독성물질 정보센터(Poison Information Center) (213) 484-5151
- (6) 의료진 안내 및 소개(Doctoral Referral Service) (213) 483-6122
- (7) 암정보 안내(Cancer Information Service) 무료전화 (800) 4-CAN-CER
- (8) 암상담(Cancer Counseling Line) (213) 206-6019
암환자 및 가족들의 정신, 사회학적 카운셀링(상담) 무료전화 (800) 352-7422
- (9) 국립 암정보기관(National Cancer Info. Service) 무료전화 (800) 638-6694
- (10) 노인성 망각증(Alzheimer's Disease Hot Line) 무료전화 (800) 621-0379

●정보 및 안내(Information and Referral)

- (1) 한인건강정보센터
981 S. Western Ave. #205 L.A., CA 90006
(213) 732-5648
- (2)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역사회 노인기관(Senior Citizens Affairs, Area Agency on Aging, L.A. County)
1102 Crenshaw Bl. L.A., CA 90019-3198
(213) 857-6466
- (3) 로스앤젤레스시 노인국(Department of Aging, Area Agency on Aging, L.A. City)
600 S. Spring St. #900 L.A., CA 90014
(213) 485-4402
- (4) 미국은퇴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
3200 East Carson St. Lakewood, CA 90712
(213) 496-2277
- (5) 미국은퇴자 협회-9(AARP-9)
자녀봉사자 기회, 세금보고 협조 및 55세 이상자의 원숙한 운전을 위한 특수 정보
(213) 427-9611

- (6) L.A시 오락시설 및 공원국 노인프로그램(Senior Citizens Program/City Recreation & Parks Dept.)
200 N. Main St. City Hall East #1350 L.A., CA 90012
(213) 485-4851
- (7) 후트힐 가정봉사기관(Project Cope, Foothill Family Service)
118 S. Oak Knoll Ave. Pasadena, CA 91101
(818) 795-6907
노인들의 학대, 협박, 착취로 부터의 보호.
노인과 어린이와 관계 상담.
- (8) 앤드러스노인센터(Andrus Older Adult Center) (213) 743-3493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002 Child's Way
University Parks-MC1591 L.A., CA 90089

●이종언어 정보 및 안내 (Foreign Language Information & Referral)

- (1) 한국노인을 위한 정보 및 안내 (Korean Senior Citizen I & R)
(213) 732-3534, 380-9948, 386-8138, 737-7573
- (2)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노인을 위한 안내(Asian/Pacific Coalition on Aging)
1102 S. Crenshaw Bl. #43 L.A., CA 90019
(213) 933-4982

●노인을 위한 다목적센터 (Senior Multipurpose Centers)

이 기관은 주거문제 범위로 부터의 보호, 건강문제, 공공사회봉사, 법적문제 및 고용협조문제 등을 봉사한다.

- (1) Central Area
Theresa Lindsay Multipurpose Senior Center
4515 South Central Ave. L.A., CA 90011
(213) 232-1246

- (2) North Side
Hollywood Multipurpose Senior Center
6501 Fountain Ave. Hollywood CA 90028
(213) 465-2158
- (3) South Side
David Cunningham Multipurpose Senior Center
2475 W. Washington Bl. L.A., CA 90018
(213) 734-9091
- (4) San Fernando Valley
VBS Reseda Multipurpose Senior Center
18255 Victory Bl. Reseda, CA 91335
(818) 705-2345

●음식물의 제공 및 가정배달 장소 (Nutrition Sites and Home-Delivered Meals)

만약 가까운 주위에 영양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지역 시청에 문의한다. 대부분 교통편의도 제공한다.
(교통편의가 없거나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분을 위한 영양프로그램)

- (1) L.A시 오락 및 공원기관(AAA)
200 N. Main St. 1350 City Hall East. L.A., CA 90012
(213) 485-4884
- (2) L.A국제협회(L.A. AAA)
435 S. Boyle Ave. L.A., CA 90033
(213) 264-6210
- (3) 샌 빈센트 노인영양프로그램(St. Vincent's Senior Citizen Nutrition Program)
2131 W. Third St. L.A., CA 90057
(213) 484-7775
- (4) Mid-Wishire에 헬리콥터 지역에는 가정배달이 가능함.
노인활동 프로그램(Senior Citizens Action Program)
노인들의 영양과 건강 L.A. 통합구역
3626 E. 5th St. Room:54 L.A., CA 90063
(213) 263-3944

- (5) 후트힐 지역활동 커뮤니티서비스(Foothill Area Community Services)
노인의 활동과 영양프로그램
85 E. Holly St. Pasadena, CA 91103
(818) 795-8120
- (6) 글렌데일영양프로그램(Glendale Nutrition Program)성인오락센터
201 E. Colorado Bl. Glendale, CA 91205
(818) 241-4137
- (7) 노인 영양 오락프로그램(Senior Citizens Nutrition & Recreation Program)
1130 Lincoln Bl. Santa Monica, CA 90403
(213) 451-1674
- (8) 가정배달 식사프로그램(Meals on Wheels)
1102 Crenshaw Bl. L.A., CA 90019
(213) 857-6466
우편번호별로 나누어진다.

●에스코트(호송) 및 교통편의 프로그램 (Escort Programs and Transportation)

에스코트는 노인들의 가정방문여행을 돕는 것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하기 힘든 분을 위한 프로그램임.

- (1) 노인 및 헨디캡(불구인)을 위한 L.A.시의 교통프로그램(Elderly and Handicapped Community Transit Programs-City of L.A.)
L.A. City (213) 485-4969
Hollywood-Wilshire (213) 483-7002
대젤버스 프로그램 L.A.City (213) 485-5317
- (2) L.A.카운티 교통 안내(Los Angeles County Transportation Referral Info. Line)
24시간 일주일 내내 노인 및 불구인을 위해 110가지의 각종 교통편의 프로그램이 있음. 단 24시간 이전에 예약할 것.
L.A. (213) 686-0950
Airport Area (213) 671-7464
Burbank/Glendale (818) 956-1100

- San Fernando Valley (818) 501-4447
San Gabriel Valley (818) 350-6833
So Bay/Long Beach (213) 603-8962
W. Los Angeles (213) 551-2929
- (3) Hawaiian Garden서비스(Hawaiian Gardens Paratransit Service)
21815 Pioneer Bl. Hawaiian Gardens, CA 90716
(213) 420-2641 Ext. 240

●양로원 (Adult Day Care)

- (1) 구세군(The Salvation Army)
4223 Emerald Street Torrance, CA 90503
(213) 370-4515
- (2) O.P.I.C.A. 양로원(O.P.I.C.A. Adult Day Care Center, Inc.)
11759 Missouri Ave. Los Angeles, CA 90025
(213) 478-0226
- (3) 선 샤인 양로원 (Sunshine Adult Day Care)
2445 W. Washington Bl. L.A., CA 90018
(213) 733-8768
- (4) 중앙 양로원 (Central Adult Day Health Care Center)
843 Laguna Ave. L.A., CA 90026
(213) 250-1795
- (5) 케어로 양로원 (Keiro Nursing Home)
2221 Lincoln Park Ave. L.A., CA 90031
(213) 225-1393
- (6) 일본 노인 양로원 (Japanese Home for the Aged)
325 S. Boyle St. L.A., CA 90033
(213) 263-9651

● 자원봉사 및 취업 기회 (Volunteer & Employment Opportunities)

- (1) 한인건강정보센터
981 S. Western Ave. # 205 L.A., CA 90006
(213) 732-5648
- (2) DOVES 프로그램
(Dedicated Older Volunteers in Educational Services)
L.A. Unified School District
450 N. Grand Ave. Room G-252 L.A., CA 90012
(213) 625-6080
- (3) RSVF(퇴직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6501 Fountain Ave. L.A., CA 90028
(213) 461-4363. L.A. (213) 736-1311
- (4) 카운티 국립노인의회(The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County))
650 S. Spring St. # 721 L.A., CA 90014
(213) 622-6151
직업훈련, 저소득 노인일꾼 민원 협조
- (1) L.A. 카운티 의료협회(Los Angeles County Medical Association)
1925 Wilshire Bl. L.A., CA 90057
(213) 483-6122
3명의 전문의 이름을 대줌.
- (2) L.A. 검안센터(Optometric Center of Los Angeles)
3916 S. Broadway L.A., CA 90037
(213) 234-9137
남加州 대학의 광학과 의 한 부분으로, 전반적인 광학에 대한 봉사,
의료보험 메디칼과 메디케어 받음.
- (3) L.A. 치과협회(Los Angeles Dental Society)
1127 Wilshire Bl. # 1406 L.A., CA 90017
(213) 481-2133
3명의 치과 의사 이름을 제공함.

- (4) 미국 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
2975 Wilshire Bl. Suite 200 L.A., CA 90010-1110
(213) 386-1605
교통편의, 제공, 가정요법 및 특수 경우의 요구에 대한 상담.
- (5) 미국 당뇨병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3460 Wilshire Bl. # 900 L.A., CA 90010
(213) 381-3639
- (6) 미국 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3550 Wilshire Bl. 5th floor L.A., CA 90010
(213) 385-4231
- (7) 미국 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
5858 Wilshire Bl. # 300 L.A., CA 90036
(213) 935-5864
- (8)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s)
2700 Wilshire Bl. L.A., CA 90057
(213) 739-5200
- (9) 노인성 망각증(Alzheimer's Disease) 및 관련 질병협회(ADRDA of Los Angeles)
11321 Lowa Ave. # 7 L.A., CA 90010
(213) 477-6071
- (10) 관절염협회(Arthritis Foundation)
4311 Wilshire Bl. # 311 L.A., CA 90010
(213) 938-6111
- (11) L.A. 카운티 정신건강협회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2415 W. 6th St. L.A., CA 90057
(213) 738-4961
- (12) 미국 백혈병협회(Leukemia Society of America)
5800 S. Eastern St. # 300 L.A., CA 90040
(213) 724-4582
- (13) 근육 퇴색병협회(Muscular Dystrophy Asso.)
3450 Wilshire Bl. # 407 L.A., CA 90010
(213) 387-5157
- (14) 부분적 실명센터(Center for the Partially Sighted)
919 Santa Monica Bl. # 200 Santa Monica, CA 90401
(213) 458-3501

- (15) L.A.카운티 족병의료협회(Los Angeles County Podiatric Medical Association)
3250 W. Lomita Bl. # 106 Torrance, CA 90505
(213) 775-2203
- (16) L.A.카운티 오스티오펙틱 의료협회(L.A. County Osteopathic Medical Assoc.)
(213) 595-9595

●건강관리 (Health Care)

- (1) L.A.자원센터(Los Angeles Resource Center)
21231 Hawthorne Bl. #310 Torrance, CA 90503
(213) 543-4808
노인의 두뇌이상 및 두뇌이상자의 협조인을 위한 기관, 법률상담
- (2) Alta 의료건강봉사기구(Alta Med Health Service Corporation)
다목적 노인봉사 프로그램
512 S. Indiana L.A., CA 90063
(213) 263-2114
- (3) 노인메디케어 프로그램(Elder MED/CARE Program)
무료전화 (800) CARE-4-ME
- (4) East L.A. 건강특수사업(East Los Angeles Health Task Force)
4716 East Brooklyn Ave. L.A., CA 90022
(213) 261-2171
다목적 노인봉사 프로그램
- (5) Knights of Malta 무료의료원(Knights of Malta Free Clinic)
2200 W. Third St. L.A., CA 90057
(213) 384-4323
노인의료원은 오전 8시부터 8시까지 전화할것
- (6) L.A. 무료의료원(Los Angeles Free Clinic)
8405 Beverly Bl. L.A., CA 90048
(213) 653-1990
건강관리, 치과서비스, 상담, 법에 대한 충고

- (7) UCLA/USC 노인학센터
(UCLA/USC Long Term Care Gerontology Center)
10833 Le Conte Ave. A-671 Factor Building L.A., CA 90024
(213) 825-8253
신체검사, 평가, 차후진료
- (8) UCLA노인성 신경정신병과(Geriatric Clinic/UCLA Neuro-Psychiatric Institute)
760 Westwood Plaza L.A., CA 90024
(213) 825-9897
노인의 정서문제(우울증, 걱정, 혼란증, 기억상실증 등)

●가정에서의 협조봉사기구 (In-Home Supportive Services)

- (1) L.A. 국립도서관(도서관봉사) : Service to Shut-ins, L.A. Public Library
(213) 752-4167
자원봉사자들이 도서를 운반해 주거나 책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봉사활동
- (2) L.A.시 우편배달봉사(Carrier Alert City of L.A.)
(213) 485-4402
매일 우편물 점검과 함께 노인의 안전 및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3) 가정내의 협조봉사기구(공공사회 봉사기구)("In-Home Supportive Services" Dept. of Public Social Services)
장남,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가정내에서의 안전상태를 돕는다
Hollywood/Metro North
(213) 669-3655
- (4) Upjohn 건강보호센터(Upjohn Health Care Services)
(213) 930-2115
가정내에서의 기술적인 간호를 위함.
- (5) L.A. 가정방문 간호협회(Visiting Nurse Asso.)
L.A. (Main Office)
(213) 381-5802

- (6) 거주병원 가정방문 건강관리 에이전시(Hospital Home Health Care Agency of California)
L.A. (213) 381-1400
- (7) 가정방문 건강관리봉사(Home Health Services) (213) 390-7454
- (8) 국립의료 가정관리(National Medical Home Care)
(213) 475-7665
- (9) 국립가내 건강서비스(National In-Home Health Services)
(818) 988-7575 or (213) 873-5555
- (10) 건강관리(Action Health Care) (213) 659-9930

● 비상시의 협조기구 (Emergency Help Services)

비상경보조직체(Emergency Alert Response System; (EARS) (AAA) L.A. 저소득층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4군데의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Valley Hospital Medical Center (818) 997-0101 Ext. 8190
West & S. Daniel Freeman Memorial Hospital (213) 268-5000
North & East White Memorial Hospital (213) 268-5000
Harbor San Pedro Peninsula Hospital (213) 514-5295

● 법률과 세금문제 협조기구 (Legal and Tax Assistance)

- (1) L.A.시 노인국(L.A. City AAA)
145 S. Fairfax Ave. 2nd floor L.A., CA 90036
(213) 939-0506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무료봉사함.
- (2) L.A. 법률상담재단(Legal Aid Foundation of L.A.)
1550 W. 8th St. L.A., CA 90017
(213) 487-3320

- (3) 연료사용자를 위한 세금공제와 환불(Utility Users Tax Exemption & Refund)
City Hall(시청) Room 2402 L.A., CA 90012
(213) 485-3972
- (4) 메디케어 옹호계획(Medicare Advocacy Project)
714 W. Olympic Bl. Suite 745 L.A., CA 90015
(213) 741-0566
- (5) 변호사 소개 및 정보서비스
(Lawyer Referral and Information Service)
P.O. Box 55020 L.A., CA 90055
(213) 622-6700
- (6) 거주특권세관(California State Franchise Tax Board)
624 S. Grand #900 L.A., CA 90071
무료전화 (800) 852-5711

● 인권주장 (Advocacy)

- (1) L.A.시 노인국(Los Angeles City Council on Aging)
600 S. Spring St. #900 L.A., CA 90014
(213) 485-7485
- (2) L.A. County 노인관계위원회(The Affiliated Committees on Aging of L.A. County)
1102 Crenshaw Bl. L.A., CA 90019-3198
(213) 857-6441
- (3) 미국노인의회 거주지회(The Congress of California Seniors/National Council of Senior Citizens)
1010 S Flower St. 5th Floor L.A., CA 90015
(213) 747-3597
- (4) KABC Radio국 인권옹호자과(KABC Radio Ombudsman)
3321 S. La Cienega Bl. L.A., CA 90016
(213) 557-7246
- (5) 거주 소비자보호국(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107 S. Broadway Room 8020 L.A., CA 90012
(213) 620-4360

● **호스피스 서비스**
(Hospice Services)

- (1) 호스피스 케어, 병원 가정방문 건강관리(Hospice Care, Hospital Home Health Care Agency)
2201 S. Miramar L.A., CA 90057
(213) 381-1400
- (2) 호스피스(Good Shepherd Hospice)
3741 Stocker St. #102 L.A., CA 90008
(213) 291-4130



▲ '합인건강정보센터'가 주최한 노인건강관리 세미나에는 많은 교포 노인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Korean Health Education,
Information & Referral Center**

BOARD OF DIRECTORS

Eugene Han, M.D., M.P.H.	Mark Brown
Col. Young O. Kim	Dong Il Lee, M.D.
Portia Choi, M.D., M.P.H.	Yong Il Kim
Andrew S. Kim, M.D.	Henry Kim
Yon-Hee Lee, M.D.	Jay Kim
Nicki Seiser, M.S. Ed., R.N.	Seung Soo Han, M.D.
Sheen Myung Na, Esq.	Sarah Kim
J.C. Kim	Sang Kee Lee
Suki Murayama	Sang Hee Ahn

ADVISORY BOARD OF DIRECTORS

Korean Medical Association
Korean Dental Association
Korean Nurse Association
Korean Pharmacist Association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Acupuncturist Association
Korean Social Workers Association

STAFFS

Myung Lee, Executive Director
Janet Choi, Community Health Nurse
Kathy Paik, Program Assistant

**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

Peter F. Schabarum, <i>First District</i>	Deane Dana, Chairman <i>Fourth District</i>
Kenneth Hahn <i>Second District</i>	Michael D. Antonovich <i>Fifth District</i>
Edmund D. Edelman, <i>Third District</i>	